

# 「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(안)

## 1. 개정 이유

ICT 예산(일반·균특) 전담관리 확대 추진으로 종전 과기정통부 훈령을 고시로 상향, 명칭 변경에 따라 전담기관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- 기준의 법적 근거 규정 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, 제16조, [별지 제6호 서식])
  - 종전의 「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」을 「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」(이하 “관리규정”)으로 명칭 변경
- 고시에서 위임·적용받는 조항 반영(안 제1조, 제7조)
  - 고시의 전담관리 근거 조문 이동(제8조→제4조) 및 작성양식 일부 삭제에 따른 반영

붙임: 「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(붙임)

## 개정안 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개정 사유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기준은 「<u>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</u>」(이하 “<u>관리지침</u>”이라 한다) <u>제8조</u> 및 제18조에 따라 ICT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적용범위)</b> 이 기준은 <u>관리지침</u>을 적용받는 기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1. “비목”이란 <u>관리지침</u>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연구개발비, 유형자산, 민간이전을 말한다.  2. ~ 13. (생략)  14. “환수금”이란 <u>ICT 기금사업 관리지침</u>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<u>관리지침</u> 및 기획재정부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「계약예규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기준은 「<u>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</u>」(이하 “<u>관리규정</u>”이라 한다) <u>제4조</u> 및 제18조에 따라 ICT 기금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적용범위)</b> 이 기준은 <u>관리규정</u>을 적용받는 기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법령이나 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</p> 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1. “비목”이란 <u>관리규정</u>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업무추진비, 연구개발비, 유형자산, 민간이전을 말한다.  2. ~ 13. (현행과 같음)  14. “환수금”이란 <u>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</u>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을 말한다.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이외에는 <u>관리규정</u> 및 기획재정부의 「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, 「계약예규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○ 규정 변경  -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 -적용조문 변경</p> <p>○ 규정 변경</p> <p>○ 규정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<p><b>제7조(협약의 체결)</b>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행계획서[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작성양식 1]</li> <li>2.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(보조사업에 한함)[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작성양식 2]</li> <li>3. 협약서[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작성양식 3]</li> <li>4. ~ 10. (생략)</li> </ol> <p><b>제8조(협약의 변경)</b> ① 전담기관의 장은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협약사업비,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 변경내용이 중요한 경우 재협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행기관의 장은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16조제2항제1호의 승인사항으로 분류되는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[별지 제6호 서식] 및 수행계획변경 확인서[별지 제7호 서식] 등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총괄책임자의 변경은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11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만 가능하며, 총괄책임자 변경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9조(협약의 해약)</b> ①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17조제1항 각 호에</li> </ol>	<p><b>제7조(협약의 체결)</b>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행계획서[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작성양식 1]</li> <li>2. &lt; 삭 제 &gt;</li> <li>3. 협약서[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작성양식 2]</li> <li>4. ~ 10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 <p><b>제8조(협약의 변경)</b> ① 전담기관의 장은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1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행기관에 대하여 협약사업비,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변경 등 변경내용이 중요한 경우 재협약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수행기관의 장은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16조제2항제1호의 승인사항으로 분류되는 내용에 대한 변경신청을 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[별지 제6호 서식] 및 수행계획변경 확인서[별지 제7호 서식] 등의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총괄책임자의 변경은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11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만 가능하며, 총괄책임자 변경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9조(협약의 해약)</b> ① 전담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17조제1항 각 호에</li> </ol>	<p>○ 규정 변경</p> <p>○ 규정 변경</p> <p>○ 규정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<p>해당하는 사항</p> <p>2. 수행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, 별도 공모사업 규정위반 등 중대한 협약 위반</p> <p>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<u>관리지침</u>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중지, 현장실태조사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0조(사업비 관리기준)</b> ① 수행기관은 <u>관리지침</u> 제2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제11조(사업비 사용기준)</b> ① 사업비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,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<u>관리지침</u> 제16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b>제15조(정산보고)</b> ① <u>관리지침</u>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는 수행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, 참여기관 등이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부도,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[별지 제8호 서식]와 해당</p>	<p>해당하는 사항</p> <p>2. 수행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, 별도 공모사업 규정위반 등 중대한 협약 위반</p> <p>② 전담기관은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<u>관리규정</u>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집행중지, 현장실태조사,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0조(사업비 관리기준)</b> ① 수행기관은 <u>관리규정</u> 제2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 및 관리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1조(사업비 사용기준)</b> ① 사업비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,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<u>관리규정</u> 제16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b>제15조(정산보고)</b> ① <u>관리규정</u>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는 수행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, 참여기관 등이 경우 자체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이 부도,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행기관 이외의 참여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정산보고서 제출 시 세부비목별 집행내역서[별지 제8호 서식]와 해당</p>	<p>0 규정 변경</p> <p>0 규정 변경</p> <p>0 규정 변경</p>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 사유
<p>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2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인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b>제16조(정산방법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사업비 정산 시 <a href="#">관리지침</a>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되며,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[별표 2]에 따른다.</p>	<p>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2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을 인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6조(정산방법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사업비 정산 시 <a href="#">관리규정</a>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되며, 세목별 불인정기준은 [별표 2]에 따른다.</p>	<p>o 규정 변경</p>

현 행

개 정 안

[ 별지 제6호 서식 ] 수행계획 변경신청서

[ 별지 제6호 서식 ] 수행계획 변경신청서

**수행계획 변경신청서**

**수행계획 변경신청서**

사업명	세부사업명			
	내역사업명			
수행기관				
수행기간	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	
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.				
20 . . . . .				
총괄책임자 :				(인)

사업명	세부사업명			
	내역사업명			
수행기관				
수행기간	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	
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.				
20 . . . . .				
총괄책임자 :				(인)

(연락담당자 :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(연락담당자 : 성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- ※ 변경내용이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의 승인사항인 경우 주무부서의 수행계획 변경확인서[별지 제7호 서식] 첨부
- ※ '변경구분' 란에는 수행내용, 수행기간, 사업비(예산항목 변경 등) 변경항목을 기재
- ※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:1로 대비되도록 작성, 예산 변경 시 증감비율도 기재

- ※ 변경내용이 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승인사항인 경우 주무부서의 수행계획 변경확인서[별지 제7호 서식] 첨부
- ※ '변경구분' 란에는 수행내용, 수행기간, 사업비(예산항목 변경 등) 변경항목을 기재
- ※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:1로 대비되도록 작성, 예산 변경 시 증감비율도 기재